

서울고등법원 2024. 7. 12 선고 2023나2056546(본소), 2023나2056553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 ·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4. 7. 12 선고 2023나2056546(본소), 2023나2056553(반소) 판결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11. 9 선고 2022가합105700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

담당변호사 이승준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1. B

2. C

피고 1,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로고스

담당변호사 허영범

피고, 피항소인 3. D

4. E

5. F

피고 3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런티어

담당변호사 배정원

변 론 종 결 2024. 5. 17.

판 결 선 고 2024. 7. 12.

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11. 9. 선고 2022가합105700(본소), 2023

가합102791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
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 B,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85.60㎡를 인도하라.
3. 원고(반소피고)의 피고(반소원고) B, C 및 피고 D, E,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4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 B, C 사이의 본소, 반소를 합한 소송 총비용 및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 D, E, F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 B, C은 피고 D, E,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. 2. 12. 접수 제99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, 피고 D는 위 각 부동산 중 3/7 지분에 관하여, 피고 E는 같은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, 피고 F은 같은 부동산 중 2/7 지분에

관하여 각 2000. 2. 1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반소

주문 제2항과 같다.

2. 항소취지

가. 본소

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.

나. 반소

주문 제1, 2항과 같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“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“를 ”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하고,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“로 고친다.

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“1999. 2. 10.경.”을 “1999. 12. 10.”로 고친다. 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부터 제10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유자인 피고 B, C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반소는 부모자식 간에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C은 원고의 자녀로서, 피고 B은 원고의 사위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정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해당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는 하다. 그러나 부모와 성년의 자녀 · 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, 제975조에

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데(대법원 2013. 8. 30.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), 갑 제4, 14호증, 을 제7호증의1,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원고는 2002. 11. 27. 서울 송파구 P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, 위 취득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에 번갈아 가며 수차례 전입신고를 한 점, 원고는 현재 망 G이 설립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U가 1인 사내이사로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V의 최대주주이자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, 원고 주장의 사정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』

■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 내지 7행을 삭제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피고 B,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원고의 피고 D, E, F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, 피고 B,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,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,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의 인도를 명하며,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성윤, 판사 정경근, 판사 박순영

별지